

## 대천우송수련원 운영규정

제 정 1996. 6.

개 정 1999. 10.

개 정 2008. 9.

개 정 2020. 6.

**제1조 (명칭)** 수련원의 명칭은 “우송대학교 대천우송수련원”(이하 “수련원”)이라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직원과 학생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·수련 활동과 심신단련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이용하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06.16.)

**제3조 (위치 및 사무소)** 수련원의 위치는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26(신흥동 1944)에 소재하며, 관리·운영 업무는 대학에서 수행하되 수련원에 관리사무실을 둔다.(개정 2020.06.16.)

**제4조 (시설)** ①수련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0.06.16.)

1. 규 모 : 지하 1층, 지상 5층
2. 연 면 적 : 1,438.27m<sup>2</sup> (436평)
3. 객 실 수 : 19실 (4-7인용 12실, 9-13인용 7실)
4. 부대시설 : 세미나 룸(2실 55명 동시 수용), 식당, 샤워장, 화장실
5. 수용인원 : 190명
6. 기 타 : 관리실 및 관리인 숙소 각 1실

**제5조 (사업)** ①수련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정하여 운영한다.

1. 교직원 연수, 체력단련, 정서함양을 위한 대여사업
2. 학생의 MT, 세미나 등 교육목적과 연계활동 및 정서함양의 장소 대여
3. 기타 수련원 운영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

**제6조 (조직)** 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에 담당자를 두고, 수련원에 관리인을 두며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20.06.16.)

1. 대학 담당자는 수련원 홍보, 이용접수 및 처리, 회계업무 등을 수행한다.
2. 관리인은 수련원 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옥내·외 시설설비를 관리하며, 수련원과 관련한 대학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.

**제7조 (이용 및 절차)** ①수련원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약제로 한다.

②이용 희망자 및 기관은 사용 예정일로 부터 1주일 전까지 예약을 신청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06.16.)

③대학의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목적, 인원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수련원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.(개정 2020.06.16.)

④대학과 관련된 기관에서 수련원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객실부족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.(개정 2020.06.16.)

**제8조 (이용기간)** ①수련원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(개정 2020.06.16.)

1. 1일 미만의 이용은 1일로 산정한다.
2. 1일 이용은 입실일 14:00부터 익일 11:00까지로 한다.

3. 이용시간에 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사용료)** ①수련원은 운영과 시설설비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, 사용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0.06.16.)

②(삭제 2020.06.16.)

**제10조 (제한 사항)** ①수련원 사용증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.

②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내에서 타인에 방해를 주는 과격한 행동, 지나친 음주, 기타 수련원 이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한다.

③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취사, 캠프파이어, 오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④수련원 사용 후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은 쓰레기 분리수거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⑤이용자는 관리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, 또한 이용기간 중 이용과 관련한 관리인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**제11조 (변상 및 이용중단)** ①수련원 이용 중 시설설비, 기물 등을 손괴 또는 분실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현물이나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.

②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을 위배한자는 퇴실시킬 수 있으며, 사용료는 퇴실처분 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한다.

**제12조 (회계처리)** 수련원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교비회계 기준에 의한다.(개정 2020.06.16.)

**제13조 (행정사항)** 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0.06.16.)

②(삭제 2020.06.16.)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0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